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방위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6.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획득 절차 외에 별도의 '신속획득(fast-track)'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속소요 결정', '시범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방위력개선 사업추진방법·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요결정과정에서 소요제기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 획득절차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속소요 절차 마련(제22조의2 신설)

사업착수 후 5년 이내에 전력화 가능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성능개량 등의 경우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고 신속소요 결정절차는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시범사업 절차 등 마련(제24조의4 신설)

시범사업은 사업공모, 대상사업선정, 입찰공고, 시제품개발, 성능입증 시험으로 수행하고, 성능입증시험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팀 구성 등

의 절차를 마련함

다. 각군의 시범사업 소요예산 편성절차 마련(제21조)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편성하도록 함

라.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61조제3항제5호 신설)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개발기관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함

마. 사전개념연구 수행 절차 마련(제22조의3 신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사전개념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수행기관에게 무기체계 필요성·운영개념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명확화(제24조)

선행연구 완료, 신속소요 결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신속소요 결정 및 시범사업의 경우에 시험평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사. 시험평가 절차 구체화(제27조)

시험평가 추진 시에는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 계획과 결과판정은 운

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아.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등 업무대상 확대(제71조제2항)

국방기술품질원의 형상관리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업무범위에 신속소
요 결정 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력화되는 무기체계를 포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전력화지원요소”를 “전력화지원요소와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속소요 결정 절차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 착수(예산편성) 후 5년 이내 전력화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1.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 중인 두 가지 이상의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무기체제로 연구개발하는 경우
3. 민간에서 자체개발한 제품을 개량하여 군수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동참모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신속소요결정 절차는 제22조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간소화 하

거나 제22조제6항을 법 제15조의3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 수행 절차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수행하도록 할 경우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대상과제안을 제출받은 경우 필요성, 시급성, 수행기관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2.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대안분석
5. 신속 전력화 가능성(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수행여부 검토(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제1항 중 “완료된”을 “완료된 경우 또는 법 제15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여부와 제21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지 여부를 포함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시험사업의 절차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업공모
2. 대상사업 선정
3. 입찰공고
4. 시제품 개발 등
5. 시험운용 및 성능인증시험

②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인증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 성능인증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
3. 성능인증시험팀 구성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③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직할기관과 합동부대는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요구하여 통합 수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입증팀의 구성 및 운영, 성능입증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개발시험평가계획과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8항제2호 중 “일부”를 “재구매하거나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과 결과 판정의 경우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제6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71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의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제71조제2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이거나 법 제17조의2의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의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입증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성능입증시험은 이 영 시행 후에 제24조의4제1항1호에 따라 사업공모되는 시범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예산편성) ① (생략)	제21조(예산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u>	②----- ----- ----- ----- ----- 전력화지원요소와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
<신 설>	제22조의2(신속소요 결정 절차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 착수(예산편성) 후 5년 이내 전력화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1.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 2.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 중인 두 가지 이상의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무기체

<신 설>

계로 연구개발하는 경우

3. 민간에서 자체개발한 제품을
개량하여 군수품으로 도입하
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동참모의장이 민
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신속소요결정 절차는 제22조
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법 제1
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
항을 간소화 하거나 제22조제6
항을 법 제15조의3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 수행 절
차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
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
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수
행하도록 할 경우 소요제기기관
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 대상과
제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
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대상
과제안을 제출받은 경우 필요
성, 시급성, 수행기관의 능력 등

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
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
업청장 및 국방과학연구소장 또
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③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법 제
1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
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2.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3. 전력화지원요소
4. 대안분석
5. 신속 전력화 가능성(법 제15
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
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6.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
가의 통합수행여부 검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
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시험평가 방안

5. ~ 8. (생략)

③·④ (생략)

<신설>

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

----- 완료된 경우 또는 법 제15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가 결정된 -----
-----.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평가 방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여부와 제21조제5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지 여부를 포함한다)

5.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시험사업의 절차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업공모

2. 대상사업 선정

3. 입찰공고

4. 시제품 개발 등

5. 시범운용 및 성능입증시험

②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능입증시험 대상장비 및 수량

2.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평가 기준

3.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4. 성능입증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③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직할기관과 합동부대는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u>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요구하여 통합 수행할 수 있다.</u> <u>⑤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입증팀의 구성 및 운영, 성능입증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u>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 ----- <u>개발시험평가계획과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계획</u> ---. ----- ----- -----.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③ ----- ----- ----- ----- -----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④ ~ ⑦ (생략)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생략)

<신 설>

⑨ (생략)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

----- . 다만, 국방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
지 아니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1. (현행과 같음)

2. -----
----- 재구매하거나 일부 -----

3. (현행과 같음)

⑨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신속
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과 결과
판정의 경우 운용시험평가 절차
를 따른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 8. (생략)

④ ~ ⑥ (생략)

제71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의 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나.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

3. 법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 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 바. (생략) <u><신설></u> 4. ~ 8. (생략)	<u>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의 형상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u> 3.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이거나 법 제17조의2의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의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u> 4. ~ 8.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613